

의안번호	2208029
의 퇴 인	윤후덕의원
회 답 일	2025.2.19.
추계번호	25D0693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96조의2(보석허가결정 후의 조치)	법원은 주거를 병원으로 제한하여 보석을 허가한 경우에는 반기 1회 이상 그 병원에 피고인에 대한 진료경과, 현재의 건강상태, 예후 등(이하 ‘건강상태등’이라 함)을 조회하여야 함(제1항)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보석을 허가한 사유에 피고인의 건강상 이유가 포함된 경우에는, 보석을 허가한 법원은 법원사무관등으로 하여금 반기 1회 이상 피고인의 건강상태등을 조사하도록 하여야 함(제2항)	의무규정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96조의2(보석허가결정 후의 조치)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상세 사유

□ 건강상태등 조회(안 제96조의2 신설)

- 개정안에 따라 ‘법원이 주거를 병원으로 제한하여 보석을 허가한 경우’ 또는 ‘보석을 허가한 사유에 피고인의 건강상 이유가 포함된 경우’에 반기 1회 이상 병원에 피고인에 대한 건강상태등을 조회하도록 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현재 「보석·구속집행정지 및 적부심 등 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 제13조 제1항¹⁾에 근거하여 법원은 주거를 병원으로 제한하여 보석을 허가한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그 병원에 피고인에 대한 건강상태등을 조회하고 있음
 - － 대법원에 따르면 실무상 보석허가결정 후의 조치로서 사실조회 및 의견조회 등의 방식으로 이를 실시하고 있고, 사실조회서 및 의견조회서의 송달료 및 회신료를 국가에서 지급하고 있음
 - － 사실조회서 및 의견조회서 송달료 단가는 산정되어 있으나²⁾, 형사 사실조회비용에 관하여는 근거규정이 없어 병원 측에서 청구하는 경우 민사사건 예규 규정³⁾에 준하여 지급하고 있음
- 다만, 법원이 주거제한을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하면서 그 주거를 ‘병원’으로 지정했는지 여부에 관한 자료가 부재하고, 현시점에서 보석허가 사유에 건강상 이유가 포함될 경우의 수를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어려움
- 또한 개별 사안마다 보석기간이 달라 개정안에 따른 반기별 1회 이상 조회 가능 여부 또한 현시점에서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어려우므로 추가재정 소요를 추계하기 곤란함

- 1) 「보석·구속집행정지 및 적부심 등 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 제13조(보석허가결정 후의 조치) ① 법원은 주거를 병원으로 제한하여 보석을 허가한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병원에 피고인에 대한 진료경과, 현재의 건강상태, 예후 등을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일정한 기간마다 주기적으로 보고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2) 대법원 제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17-21호, 제2018-45호, 제2019-24호, 제2020-28호, 제2021-52호 「국내 통상우편요금 및 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 개정예에 의함)

[표] 송달료 산정기준

송달료	인 상 (특별송달수수료 등)	기존 송달료	증가율	비 고
3,720원	-	3,720원	-	-
4,480원	760원	3,720원	20.4%	2018.8.1. 적용
4,580원	100원	4,480원	2.23%	2019.5.1. 적용
4,880원	300원	4,580원	6.55%	2020.7.1. 적용
4,980원	100원	4,880원	2.05%	2021.9.1. 적용

- 3) 「사실조사 촉탁 등의 비용 지급에 관한 예규」 제6조(지급기준) ① 법원은 조사보고서 또는 제출 문서 등과 비용청구서의 내용을 검토하여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을 비용으로 지급한다.
- ② 의료과오 여부, 질병의 원인 등에 관하여 대한의사협회 기타 의료단체에 사실조회·감정촉탁을 하는 경우에 지급할 금액은 250,000원을 기준으로 하여 적절히 가감할 수 있다.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보	과장
행정비용추계과	강아름	김안나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강아름	02-6788-4664	krm7839@nabo.go.kr